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직무와 관련된 질의만 허용 및 모욕적 질의 금지 등〉

■ 최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473호)

2026. 8.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최혁진 · 정혜경 · 허성무 · 박상혁 · 서미화 · 박민규

김준형 · 김종민 · 이성윤 · 김준혁 · 이수진 의원(11인)

2. 제 안 일 : 2026. 6. 24.

3. 회 부 일 : 2026. 7. 1.

※ 의안번호 : 1947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 및 자질 등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검증하여 공직 적격 여부를 심사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음.

그러나 실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가족사, 외모 등에 관한 질의가 반복되고, 모욕적 발언이나 정치적 공격성 언행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인사청문회가 본래의 검증 목적에서 벗어나 정쟁과 공개 망신의 수단으로 오용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는 공직후보자의 인권을 침해함은 물론 국민의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음.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위원의 질의가 후보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

에 국한되도록 ‘업무 관련성 원칙’을 신설하고, 직무와 무관한 내용이나 인격 침해성 발언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이 주의·경고, 질의 중단,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국회의장에게 징계요구 건의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재 조항을 마련했음.

이를 통해 인사청문회의 품격을 제고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정당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음(안 제7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공직후보자의 직무와 관련된 질의만 허용

개정안은 위원의 질의를 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 자질, 도덕성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원장이 질의를 중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7조의2(업무 관련성 원칙) ① 위원의 질의는 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 자질, 도덕성, 정책방향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② 위원장은 질의가 직무와 명백히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질의를 중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국회에서 검증하여 직위에 적합한 인사를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직후보자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개인 신상에 관한 의혹 제기에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여·야 간 정쟁의 소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정작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위원의 질의를 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 자질,

도덕성, 정책방향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하고, 위원의 질의가 직무와 명백히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이 질의를 중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충실하고 건전한 검증에 집중하도록 하여 당초 도입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인사청문회에서 이루어지는 위원의 질의는 「국회법」에 따른 의제 외 발언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의 질서유지권¹⁾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현행 법체계로도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일정 부분 달성할 수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체계자구의 측면에서 개정안은 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 자질, 도덕성, 정책 방향” 모두 직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포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덕성은 고위직에 요구되는 윤리성·청렴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무의 전문성을 가늠하는 직무수행능력, 자질, 정책방향 등과 함께 규정하기에는 그 성격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1) 「국회법」 제102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19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공직후보자에 대한 모욕적·비하적 질의 금지

개정안은 공직후보자의 직무와 무관한 가족사, 외모, 사생활 등에 대한 모욕적·비하적 질의를 금지하고, 이를 반복하여 위반하거나 인격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위원장이 주의·경고, 질의 중단 또는 징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표-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주의의무) ① · ② (생략) <u><신설></u>	제18조(주의의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위원은 공직후보자의 직무와 무관한 가족사, 외모, 사생활, 종교, 학연, 지역, 성적 지향 등에 대한 모욕적·비하적 질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신설></u>	<u>④ 위원장은 제3항에 위반되는 질의가 반복되는 경우 해당 위원에게 질의 중단을 명하고, 「국회법」 제155조 및 제156조에 따라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u>
<u><신설></u>	<u>제18조의2(비윤리적 청문 질의에 대한 제재) ① 위원장은 제18조제3항에 위반된 질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의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u> <u>② 위원장은 위반 질의 또는 발언이 반복되거나 인격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155조 및 제156조에 따른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u> <u>③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에 대한 윤리</u>

현행	개정안
	<u>특별위원회 회부 또는 질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u>

현행법²⁾은 위원이 허위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발언하거나 위협적·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하여 공직후보자의 직무와 무관한 가족사, 외모, 사생활, 종교, 학연, 지연, 성적 지향 등에 대한 모욕적·비하적 질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주의 또는 경고, 질의 중단·제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공직후보자의 인격을 보호·존중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여 국회 인사청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에 임하는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회법」은 의원의 모욕적 발언을 금지하고 위반 시 경고·제지, 발언 금지 또는 징계 요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인사청문회에도 적용되므로,³⁾ 개정안을 입법하는 실익이 크지 않은 측면

2) 「인사청문회법」 제18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국회법」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이 있음.

개정안 제18조제4항 및 제18조의2제2항의 징계요구 규정의 경우에도 「국회법」 제15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둘째, 징계 등의 제재조치는 침익적이므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적용 여부를 대략적으로라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개정안은 제재의 요건과 종류를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율하여 보완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안 제18조의2제2항의 경우 징계요구 요건으로 “인격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와 같이 추상적·주관적인 사항을 규율하여 적용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이고, 안 제18조의2제3항은 제재 대상이 되는 행위요건을 규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의 종류도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또는 질의 제한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제재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는 측면이 있음.

한편, 체계자구의 측면에서 개정안은 금지 규정에 대한 제재를 안 제18조제4항과 제18조의2에 분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일괄하여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단서 생략)

8.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9.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때
「**인사청문회법**」 제19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규율함으로써 조문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15